

# 안 전 보 건 계 획

2 0 2 2 . 0 1 . 0 1

**(株) 大地建設**  
DAEJI Construction Co.,Ltd.

결	작	검	검	검	승
계	신정민	남영웅	김재민	김영준	김영준

## < 목 차 >

### 제1장 총칙

- 1-1. 수립 배경
- 1-2. 관련 법령

### 제2장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경영방침 및 경영목표 설정

- 2-1. 목적
- 2-2. 책임 및 권한
- 2-3. 안전보건 경영방침

### 제3장 안전·보건관리 조직의 구성·인원 및 역할

- 3-1. 안전보건관리 체제 구축
- 3-2. 안전보건관리 조직의 구성
- 3-3. 안전보건관리 조직의 인원 및 역할

### 제4장 안전·보건 관련 예산 및 시설 현황

- 4-1. 안전보건 예산
- 4-2. 안전보건 시설

### 제5장 안전 및 보건에 관한 2020년도 활동실적 및 2021년도 활동계획

- 5-1. 2020년도 안전보건활동 성과측정
- 5-2. 2021년도 안전보건활동 계획

## 제1장. 총칙

### 1-1. 수립 배경

### 1-2. 관련 법령

# 제1장. 총칙

## 1-1. 수립배경

1-1.1 대표이사가 회사 전반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계획을 주도적으로 수립

1-1.2 사업장 안전보건경영시스템 구축 유도

1-1.3 사업장 안전보건조치의 실효성 향상 및 무재해 달성 의지 확인

## 1-2. 관련법령

### 1-2.1 산업안전보건법

제14조(이사회 보고 및 승인 등)

- ① 「상법」 제170조에 따른 주식회사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회사의 대표이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회사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이사회에 보고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대표이사는 제1항에 따른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계획을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 ③ 제1항에 따른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계획에는 안전 및 보건에 관한 비용, 시설, 인원 등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 1-2.2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3조(이사회 보고·승인 대상 회사 등)

- ① 법 제14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회사"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사를 말한다.
  1. 상시근로자 500명 이상을 사용하는 회사
  2. 「건설산업기본법」 제23조에 따라 평가하여 공시된 시공능력(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의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건설업종란 제3호에 따른 토목건축공사에 대한 평가 및 공시로 한정한다)의 순위 상위 1천위 이내의 건설회사

②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회사의 대표이사(「상법」 제408조의2제1항 후단에 따라 대표이사를 두지 못하는 회사의 경우에는 같은 법 제408조의5에 따른 대표 집행임원 을 말한다)는 회사의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회사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1.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경영방침
2. 안전·보건관리 조직의 구성·인원 및 역할
3. 안전·보건 관련 예산 및 시설 현황
4.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전년도 활동실적 및 다음 연도 활동계획

## 제2장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경영방침 및 목표설정

2-1. 목적

2-2. 책임 및 권한

2-3. 안전보건 경영방침

2-4. 안전보건 목표설정

## 2-1. 목적

대표이사는 조직에 적합한 안전보건 경영방침을 수립하여야 하며, 이 방침에는 최고경영자의 재해 예방 및 무재해 달성에 대한 의지가 분명히 제시되어 모든 조직 구성원에게 공개되어야 한다.

## 2-2. 책임 및 권한

### 2-2.1 이사회

이사회는 대표이사가 수립한 안전보건계획의 승인에 대한 권한이 있다.

### 2-2.2 대표이사

회사의 안전보건계획 운영 및 관리에 대한 총괄적인 책임이 있으며 아래의 책임 및 권한이 있다.

2.1.1 안전보건 경영방침, 목표의 승인

2.1.2 안전보건 경영자 검토 보고서의 승인

2.1.3 안전보건방침/목표/세부 추진계획의 달성을 위한 자원을 지원

2.1.4 안전보건활동에 수반되는 포상 및 징계의 승인

2.1.5 비상사태와 관련된 최종적인 의사결정

2.1.6 기타 안전보건 활동을 위한 회사 규정(지침)의 승인

### 2-2.3 대표이사 대리인

대표이사 대리인은 안전보건 업무를 담당하는 팀의 담당 임원 또는 전담 임원(안전 담당 임원)이며, 안전보건계획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아래와 같은 책임 및 권한이 있다.

2.2.1 대표이사 부재 시 대표이사의 책임 및 권한 승계

2.2.2 안전보건경영 문서화 체계에 대한 승인

2.2.3 안전보건경영 검토 보고서의 검토

2.2.4 안전보건경영 추진계획(경영목표)의 검토 및 실적 승인

2.2.5 위임전결 규정에 의한 안전보건 제반 규정의 제, 개정사항 승인

2.2.6 대·내외 커뮤니케이션 체계의 운영 및 유지를 위한 지원

2.2.7 비상사태 발생 시 조직에 대한 책임 및 권한 부여

## 2-3. 안전보건 경영방침

2-3.1 안전보건을 기업경영의 한 요소로 인식 및 관리

2-3.2 조직과 소속 현장의 안전보건 확보를 위한 위험의 지속적 개선 및 실행의지 포함

2-3.3 법적 요구사항 준수 의지 포함

2-3.4 대표이사의 안전보건 경영철학과 근로자의 참여 및 협의에 대한 의지 포함

2-3.5 대표이사는 안전보건방침이 조직에 적합한지를 정기적으로 검토

2-3.6 대표이사는 안전보건방침을 간결하게 문서화하고, 서명과 시행일을 명기하여 조직의 모든 구성원 및 이해관계자가 쉽게 접할 수 있도록 공표

2-3.7 무재해 달성에 대한 의지 포함 및 전사적 지원

# 안전보건 경영방침

주식회사 대지건설은 인간존중의 안전보건 활동을 경영의 최우선 과제로 선정하고 각자 맡은 업무에서 지속적인 예방활동과 적극적인 참여활동을 통하여 재해없는 대지건설을 실현하고자 다음과 같은 안전보건 경영방침을 설정하여 운영한다.

## 전 현장 중대재해 ZERO 달성

### 추진 방안

수주 경쟁력 확보 (안전관리)

사전 안전활동 강화 (PQ 가점)

수주 경쟁력 확보 (무벌점)

산재발생 위험요인 사전 제거 [무사고]

2022. 01. 01

(주)대지건설 대표이사 윤 형 배 (서명)

## 2-3. 안전보건 목표설정

2-3.1 중대 재해 : 0%

2-3.2 산업 재해 : 전년 대비 50% 감축

2-3.3 안전 교육 : 전 현장 분기 1회 실시

2-3.4 관련 기관 점검 : 지적사항 전년 대비 50% 감축

## 제3장 안전·보건관리 조직의 구성·인원 및역할 구성·인원 및 역할

3-1. 안전·보건관리 체제 구축

3-2. 안전·보건관리 조직의 구성

3-3. 안전·보건관리 조직의 인원 및 역할

### 3-1. 안전·보건관리 체제 구축

3-1.1 본사 조직은 회사 업무분장 규정에 의거 사내에 공표되는 업무분장에 적용한다.

3-1.2 회사의 기구 조직도는 별첨 1과 같다.(2022년 기준)

### 3-2. 안전·보건관리 조직의 구성

3-2.1 안전·보건관리 조직은 회사 직제규정에 의거 업무분장을 적용한다.

3-2.2 안전·보건관리 조직은 안전·보건관리자 자격을 갖춘 자로 구성하되 다른 업무와 겸직으로 구성 할 수 있다. 이때 겸직근무라 하더라도 안전 보건관리 업무에 대한 근무시간은 충분히 보장한다.

3-2.3 안전·보건관리 조직 구성현황은 아래와 같다.(2022.01.01기준)

직종	구분	인원	고용형태		직급형태							
			정규직	PJ직	부장	차장	과장	대리	계장	사원		
안전직 보건직	본사	3	2			1			1			임원 1
	현장(정직)	4	2		1	1						
	현장(PJ직)	1		1		1						
	계	8	4	1	1	3	0	1	0	0		

### 3-3. 안전·보건관리 조직의 인원 및 역할

#### 3-3.1 본사 안전팀장 : 부장 신 봉 규

회사의 안전보건계획을 운영하는 실무 책임자로서 다음과 같은 책임 및 권한을 가진다.

3-3.1.1 본 계획서 각 조항 중 안전팀장의 책임 및 권한

3-3.1.2 재해현황 접수, 재해원인조사 및 대책 수립

3-3.1.3 재해현황 분석 및 통계의 기록, 유지

3-3.1.4 보호구 및 안전시설의 표준화 관리

3-3.1.5 안전, 보건관리자에 대한 채용, 인사이동, 평가

3-3.1.6 비상사태 발생 조직에 대한 지원

3-3.1.7 현장 착공, 준공보고회 참석

3-3.1.8 기타 안전보건관리활동과 관련된 사항으로 대표이사에 의해 승인된 사항

### **3-3.2 본사 안전·보건관리 담당자 : 차장 남 상 욱**

3-3.2.1 안전관리사항으로서 현장 안전점검/지도, 일반/중대재해 처리(사고), 현장 안전컨설팅 관리, 산재보험 보상 업무, 사망 만인율 및 재해율 산정, 현장 안전관리비 집행검토, 산재예방활동 실적평가,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심사, 안전관리지침서 작성 및 보급, 건설재해예방 기술지도, 안전 관리자 선임 및 교육, 현장 무재해운동 업무 등을 담당한다.

3-3.2.2 보건관리사항으로서 보건관리자 선임 및 교육, 보건관리지침서 작성 및 보급, 현장 보건점검/지도, 일반/중대재해 처리(질병), 현장 보건관리비 집행 검토, 작업환경측정 관리, 일반/특수 건강검진 관리, 물질 안전 보건자료 관리, 기타보건 관리일반 업무 등을 담당한다.

3-3.2.3 일반사항으로서 근로자 재해보장 책임보험 등 기타 안전관리 일반 업무 등을 담당한다.

### **3-3.3 현장 안전보건 관리 책임자 : 각 현장 소장**

3-3.3.1 사업장의 산업재해 예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3-3.3.2 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 및 변경에 관한 사항

3-3.3.3 안전보건교육에 관한 사항

3-3.3.4 작업환경측정 등 작업환경의 점검 및 개선에 관한 사항

3-3.3.5 근로자의 건강진단 등 건강관리에 관한 사항

3-3.3.6. 산업재해의 원인 조사 및 재발 방지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3-3.3.7. 산업재해에 관한 통계의 기록 및 유지에 관한 사항

3-3.3.8. 안전장치 및 보호구 구입 시 적격품 여부 확인에 관한 사항

3-3.3.9. 그 밖에 근로자의 유해·위험 방지조치에 관한 사항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 **3-3.4 현장 관리감독자 : 각 현장 관리직원**

3-3.4.1 사업장 내 관리감독자가 지휘·감독하는 작업과 관련된 기계·기구 또는 설비의 안전·보건 점검 및 이상 유무의 확인

3-3.4.2 관리감독자에게 소속된 근로자의 작업복·보호구 및 방호장치의 점검과 그 착용·사용에 관한 교육·지도

3-3.4.3. 해당 작업에서 발생한 산업재해에 관한 보고 및 이에 대한 응급조치

- 3-3.4.4. 해당 작업의 작업장 정리·정돈 및 통로 확보에 대한 확인·감독
- 3-3.4.5. 사업장의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지도·조언에 대한 협조
  - 안전관리자 또는 안전관리전문기관에 위탁한 사업장의 경우에는 그 안전관리전문 기관의 해당 사업장 담당자
  - 보건관리자 또는 보건관리전문기관에 위탁한 사업장의 경우에는 그 보건관리전문기관의 해당 사업장 담당자
  - 안전보건관리담당자 또는 안전관리전문기관 또는 보건관리전문기관에 위탁한 사업장의 경우에는 그 안전관리전문기관 또는 보건관리전문기관의 해당 사업장 담당자
  - 산업보건의
- 3-3.4.6. 법 제36조에 따라 실시되는 위험성평가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업무
  - 1) 유해·위험요인의 파악에 대한 참여
  - 2) 개선조치의 시행에 대한 참여
- 3-3.4.7. 그 밖에 해당 작업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사항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 3-3.5 현장 안전관리자 : 현장별 별도 선임

- 3-3.5.1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또는 안전 및 보건에 관한 노사협의체에서 심의·의결한 업무와 해당 현장의 안전보건관리규정 및 취업규칙에서 정한 업무
- 3-3.5.2 위험성평가에 관한 보좌 및 지도·조언
- 3-3.5.3 안전인증대상기계등과 자율안전 확인대상 기계등 구입 시 적격품의 선정에 관한 보좌 및 지도·조언
- 3-3.5.4 해당 현장 안전교육계획의 수립 및 안전교육 실시에 관한 보좌 및 지도·조언
- 3-3.5.5 사업장 순회점검, 지도 및 조치 건의
- 3-3.5.6 산업재해 발생의 원인 조사·분석 및 재발 방지를 위한 기술적 보좌 및 지도·조언
- 3-3.5.7 산업재해에 관한 통계의 유지·관리·분석을 위한 보좌 및 지도·조언
- 3-3.5.8 안전에 관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보좌 및 지도·조언
- 3-3.5.9 업무 수행 내용의 기록·유지

### 3-3.6 현장 보건관리자 : 현장별 별도 선임

- 3-3.6.1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또는 노사협의체에서 심의·의결한 업무와

안전보건관리규정 및 취업규칙에서 정한 업무

- 3-3.6.2 안전인증대상기계등과 자율안전 확인대상 기계등 중 보건과 관련된 보호구 구입 시 적격품 선정에 관한 보좌 및 지도·조언
- 3-3.6.3 위험성평가에 관한 보좌 및 지도·조언
- 3-3.6.4 물질안전보건자료의 게시 또는 비치에 관한 보좌 및 지도·조언
- 3-3.6.5 해당 현장 보건교육계획의 수립 및 보건교육 실시에 관한 보좌 및 지도·조언
- 3-3.6.6 현장 내에서 사용되는 전체 환기장치 및 국소 배기장치 등에 관한 설비의 점검과 작업방법의 공학적 개선에 관한 보좌 및 지도·조언
- 3-3.6.7 사업장 순회점검, 지도 및 조치 건의
- 3-3.6.8 산업재해 발생의 원인 조사·분석 및 재발 방지를 위한 기술적 보좌 및 지도·조언
- 3-3.6.9 산업재해에 관한 통계의 유지·관리·분석을 위한 보좌 및 지도·조언
- 3-3.6.10 법에 따른 명령으로 정한 보건에 관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보좌 및 지도·조언
- 3-3.6.11 업무 수행 내용의 기록·유지
- 3-3.6.12 그 밖에 보건과 관련된 작업관리 및 작업환경관리에 관한 사항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 제4장 안전·보건 관련 예산 및 시설 현황

4-1. 안전·보건 예산

4-2. 안전·보건 시설

## 4-1. 안전보건관리 예산

### 4-1.1 안전보건 예산

본사 안전팀장은 판매비와 관리비 및 현장별 계상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기준으로 연간 사용 계획을 수립하고, 필요한 비용 등이 예산에 충분히 반영되었는지 확인한다.

- 4-1.1.1 설비 및 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 비용
- 4-1.1.2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훈련 비용
- 4-1.1.3 안전관련 물품 및 보호구 등 구입 비용
- 4-1.1.4 작업환경측정 및 특수건강검진 비용
- 4-1.1.5 안전진단 및 컨설팅 비용
- 4-1.1.6 위험설비 자동화 등 안전시설 개선 비용
- 4-1.1.7 작업환경개선 및 근골격계 질환 예방 비용
- 4-1.1.8 안전보건 우수사례 포상 비용
- 4-1.1.9 안전보건지원을 촉진하기 위한 캠페인 등 지원

### 4-1.2 법적계상 검토

본사 안전팀장은 도급계약서와 실행내역서에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금액이 법적 기준에 적합한지 검토한다. 검토 후 법적기준에 위배사항 발견 시 담당임원 보고 후 재계상 및 실행예산에 반영한다.

### 4-1.3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계획 작성

안전팀장 및 현장소장은 아래사항을 고려하여 매년 사용계획을 수립한다.

- 4-1.2.1 전체 공정계획 및 공종별 투입시기
- 4-1.2.2 예상 출력인원 및 기타 보건관리 사항
- 4-1.2.3 비목별 사용 구분
  - 안전관리자 등의 인건비 및 각종 업무수당 등
  - 안전시설비 등
  - 개인보호구 및 안전장구 구입비 등
  - 사업장의 안전·보건진단비 등
  - 안전보건교육비 및 행사비 등
  - 근로자의 건강관리비 등

- 기술지도비
- 본사사용비

#### **4-1.4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

- 4-1.4.1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법적 사용항목 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이 불가하다.
- 4-1.4.2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사용 시 현장소장 및 본사 안전팀의 결재를 득한 후 사용한다.

#### **4-1.5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기록 및 실적관리**

- 4-1.5.1 현장 안전관리자는 협력업체별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파악하여 매월 협력업체별 사용현황을 정리 및 관리한다.
- 4-1.5.2 현장 안전관리자는 업체별 사용내역을 포함한 월별 사용실적보고서를 작성하여 익월 5일까지 집계 및 검토 후 현장소장 및 발주처에 보고한다.

#### **4-1.6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실태 확인 및 지도, 점검**

본사 안전팀장은 현장 점검 시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사용실태에 대한 점검 및 지도한다.

### **4-2. 안전보건관리 시설**

본사 안전팀장은 회사의 본사 및 현장 안전보건관리 시설 구비에 관하여 검토하고 아래 사항에 대하여 고려하여야 한다.

#### **4-2.1 안전보건관리 시설 고려사항**

- 4-2.1.1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안전보건시설을 현장에 충분히 갖추어야 한다.
- 4-2.1.2 적합한 위험기계·기구의 방호시설 및 방호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 4-2.1.3 현장에 비치된 유해화학물질취급의 안전시설은 화학물질의 유출·누출 감시장치 및 설비를 설치해야 한다.
- 4-2.1.4 추락방지시설, 국소배기장치, 가스검지기 등 재해예방시설을 현장에 설치해야 한다.
- 4-2.1.5 근로자의 건강을 유지·증진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 4-2.2 일반 안전시설

현장 근로자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시설로서 각종 안전표지·경보 및 유도시설, 감시 시설, 방호장치, 안전·보건시설 및 그 설치비용(시설의 설치·보수·해체 시 발생하는 인건비 등 경비를 포함한다.)

- 4-2.2.1 추락방지용 안전시설(안전난간 및 발끝막이판, 추락방지용 안전방망, 안전대걸이설비, 개구부 덮개, 위험부위 보호덮개, 추락위험장소 접근방지방책 등)
- 4-2.2.2 낙하, 비래물 보호용 시설비(방호선반, 낙하물방지망, 갱폼 및 개구부 등에 설치하는 수직보호망, 경사법면 보호망(덮개), 암석방호세트 등 낙하 및 비래물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할 수 있는 설비 또는 시설)
- 4-2.2.3 도로 내 맨홀 또는 전력구 주변에서 행하는 전기공사·정보통신공사 작업 시 설치하는 웬스 등 근로자 보호 시설물
- 4-2.2.4 각종 안전표지(출입금지판, 접근 금지판, 현수막, 안전표어, 무재해 기록판, 안전수칙판, 위험경보기, 산업안전 입간판 등)
- 4-2.2.5 도로 내 상·하수관거 공사 등 공사현장에서 중장비 등으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기위하여 설치하는 교통 안전표지판 및 안전 웬스 등 안전시설
- 4-2.2.6 위생 및 긴급피난용 시설비(방진설비, 방음설비, 환기가 불충분한 장소의 환기설비, 긴급대피방송 등 근로자의 위생 및 긴급피난에 필요한 설비 또는 시설)
- 4-2.2.7 각종 안전장치(목재가공용 둥근톱의 반발예방장치 또는 날접촉 예방장치, 동력식 수동대패의 칼날접촉예방장치, 연삭이 덮개, 산소 용접기에 부착하는 역화방지기 등)
- 4-2.2.8 고압가스, 산소용기 등 위험물 방호시설 또는 저장소
- 4-2.2.9 안전모 등 개인보호구, 개인장구 보관시설
- 4-2.2.10 가설 전기시설 등의 누전차단기, 고압전선보호시설, 접지시설, 접지저항측정기 및 감전위험장소 접근방지방책 등
- 4-2.2.11 검전기 및 절연봉
- 4-2.2.12 가설전선의 피복손상 등을 방지하기 위한 가설전선거치대 또는 보호덮개
- 4-2.2.13 소화기 등 소화설비 또는 방화사 등 화재예방시설
- 4-2.2.14 가설사무실 등에 설치하는 누전·화재경보기
- 4-2.2.15 리프트 무선 호출기 또는 자동운전장치
- 4-2.2.16 근로자 재해예방을 위하여 사용하는 제빙 또는 제설비용
- 4-2.2.17 기계 또는 장비 등의 진동으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설비
- 4-2.2.18 철근, 파이프, 클램프 등 돌출부에 찰림방지를 위한 캡 등 시설

## 제5장 안전 및 보건에 관한 2021년도 실적 및 2021년도 활동계획

5-1. 2021년도 안전보건 활동 성과측정 및 경영검토

5-2. 2022년도 안전보건 활동 계획

## 5-1. 안전보건활동 성과측정

### 5-1.1 성과측정 및 모니터링

#### 5-1.1.1 성과측정, 모니터링 대상 및 주기

성과측정 및 모니터링 대상	주 기	관련조직
팀별 경영목표	연 1회 이상	안전팀
현장 안전보건경영시스템의 운영기록	연 1회 이상	전 현장
현장 안전보건경영시스템 모니터링	연 1회 이상	전 현장
본사 안전보건경영시스템의 운영기록	연 1회 이상	안전팀

#### 5-1.1.2 안전팀 경영 목표

- 1) 안전보건계획에 대한 월간 이행실적을 세부 항목별로 작성한다.
- 2) 부진사항 발견 시 사유를 기록하고 대책을 수립한다.
- 3) 결과보고서는 위임전결 규정에 의거 대표이사 대리인의 승인을 득한다.

#### 5-1.1.3 안전보건계획의 운영평가

- 1) 안전팀 담당자는 연 1회 이상 현장별 안전보건활동의 각 항목을 평가(별첨)한다.
- 2) 평가 결과는 전 현장을 집계하여 순위를 결정하고 연 1회 이상 주기적으로 공지한다.
- 3) 주기적인 안전보건계획 평가 결과는 현장별 연간평가에 반영한다.
- 4) 평가점검표는 안전팀장의 승인에 의거 주기적으로 개정한다.
- 5) 전 현장 집계 결과에 의거 하위 20%~30% 이내의 성과부진 현장별 개선 대책을 수립하고 안전팀이 지원을 실시한다.

#### 5-1.1.4 성과측정 및 모니터링 결과의 반영

- 1) 안전팀장은 현장에 대한 모니터링 및 성과측정 결과를 회사의 상벌 규정 및 절차에 의거 안전사고 현장의 징계 적용 또는 회사 포상기준에 의한 대상자 선정 시 반영할 수 있다.
- 2) 안전팀장은 연간 모니터링 결과를 성과 분석하여 연간 경영목표 실적에 기록하고 경영자 검토 보고에 포함한다.

#### 5-1.1.6 본사 안전보건경영시스템의 운영평가

- 1) 안전보건방침에 따른 목표의 달성여부를 측정

- 2) 목표와 안전보건활동추진계획의 적정성과 이행여부 확인
- 3) 적용법규 및 준수여부 평가
- 4) 사고, 아차 사고, 업무상재해 발생 시 발생원인등 사고 조사와 안전보건활동 성과의 미달성 원인 조사
- 5) 협력업체, 조직구성원, 현장 등에 대한 평가와 상벌

5-1.1.8 현장소장은 방침 안전보건 목표의 달성을 위한 안전보건계획이 적절히 이행되는지 여부를 아래사항을 참조하여 주기적으로 성과측정 및 모니터링.

- 1) 시공 계획서 : 제출, 작성상태(현장여건 감안여부), 이행상태 평가
- 2) 최 초 평 가 : 지속적 업그레이드를 통한 안전기준화 및 실천 여부
- 3) 작업 계획서 : (단위공종)작업계획서 작성 및 수시평가와의 연계성 여부
- 4) 2주간공정표 : 2주간 공정표의 작성상태 및 현장과의 연계성 여부
- 5) 수 시 평 가 : 유해위험요인의 근본원인, 안전대책의 구체적 파악여부
- 6) 2주간 안전점검표에 의한 안전점검 이행상태, 교육실시 여부, 안전조회, TBM참여여부

5-1.1.9 현장 안전보건 목표의 달성을 위한 추진계획은 연 1회 마다 성과측정

- 1) 1~2개의 목표를 집중관리 성과측정 하여도 되며, 목표가 관리수준 내로 달성 되면 또 다른 1~2개의 계획을 세워 성과관리 할 수 있다.

## 5-1.2 회사 경영목표 및 성과측정 절차의 준용

안전보건경영목표 및 성과측정(모니터링) 절차는 회사 경영목표 및 성과측정 제반절차 등을 준용한다.

## 5-1.3 협력업체 평가

### 5-1.3.1 평가절차

본사 안전담당자 및 현장 안전관리자는 안전보건경영시스템의 정착과 우수 협력업체를 선정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협력업체 평가를 실시하고 안전팀장 / 대표이사 / 현장소장에게 승인을 득한다.

5-1.3.2 주기 : 반기별 1회

5-1.3.3 대상 : 작업 중인 협력업체

## 5-1.4 전년도 활동실적 평가 시 고려사항

5-1.4.1 산업재해 감소 및 안전보건교육 실적

5-1.4.2 유해·위험요인의 제거 및 감소 실적

5-1.4.3 근로자 건강진단, 작업환경측정의 실시 및 조치내용

- 5-1.4.4 근로자 의견에 대한 검토 및 반영사항
- 5-1.4.5 협력업체 사업장에 대한 안전보건관리에 관한 사항
- 5-1.4.6 회사의 안전보건 활동에 대한 우수사례 및 미흡한 점
- 5-1.4.7 사업장에서 발생한 산업재해 및 개선 활동

### 5-1.5 2021년도 안전보건활동 성과측정구분

구분	내용		KPI 성과지표		대비	비고
			계획	실적		
5-1.4.1	P.Q.신인도 가점	중대재해	0건	0건	100%	OK
5-1.4.2	현장 안전활동 지원	현장 안전지도	40회	42회	100%	OK
		현장 안전점검	40회	42회	100%	OK
		소계	80회	82회	100%	OK
5-1.4.3	산재 발생 위험요인 사전 재거	고위험자 안전대책	3회	4회	100%	OK
		취약시기별 안전대책	3회	4회	100%	OK
		소계	6회	8회	100%	OK
						100% 달성

#### 5-1.5.1 산업 재해 감소 및 안전보건교육 실적

구분	실적		증감	비고
	2020년	2021년		
중대재해	0건	0건	0	코로나 19로 인한 대면교육 감축 실시
일반재해	3	2	-1건	코로나 19로 인한 대면교육 감축 실시
직무교육	12회	10회	-2회	코로나 19로 인한 대면교육 감축 실시

## 5-2. 2022년도 안전보건활동 계획

### 5-2.1 안전보건활동 추진계획 수립

안전보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본사 및 사업부서별 안전보건활동 추진계획 수립 시 활동실적평가결과를 분석하여 안전보건 환경변화에 따른 세부계획을 마련하여야 한다.

### 5-2.2 안전보건활동 계획 시 고려사항

5-2.2.1 목표와 안전보건활동 추진계획의 연계성

5-2.2.2 추진계획이 구체적일 것(방법, 일정, 소요자원 등)

5-2.2.3 추진내용을 측정할 지표를 포함

5-2.2.4 안전보건활동 추진계획 책임자를 지정

5-2.2.5 충분한 재정 및 기타 자원을 지원

5-2.2.6 유해위험도를 정량적으로 파악하고 개선하기 위한 우선순위(위험성평가)를 결정

5-2.2.7 발생한 산업재해와 유사한 재해에 대한 재발 방지 대책

### 5-2.3 2021년도 안전보건활동 계획

#### 5-2.3.1 연간 주요 안전보건활동 추진목표

구 분	내 용	목 표	비고
안전관리 행정처벌	안전관리비 목적 외 사용	0건	
	산업재해 보고의무 위반	0건	
	산업안전보건법령 중복 위반	0건	
	안전관리 부실벌점	0건	
산업 재해	일반재해	3건	
	중대재해	0건	
안전 점검 / 지도	현장 안전점검	60회	현장별 2월에 1회
	현장 안전지도	60회	현장별 2월에 1회
안전 교육	신입직 직무교육	반기 1회	
	경력직 직무교육(전체)	반기 1회	
	기술직 직무교육(전체)	분기 1회	

안전 보건 대책	취약시기별 안전대책	3회	
	고위험자 안전대책	3회	

5-2.3.2 연간 주요 안전보건활동 추진계획

구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 대표이사 안전보건활동 전개	[Red bar]											
2. 현장 안전지도 / 점검	[Red bar]											
3. 고령/신규/외국인 근로자 특별관리	[Red bar]											
4. 사망만인을 재해율 관리		[Red bar]										[Red bar]
5. 산안법 행정처벌 예방 안전 지도		[Red bar]	[Red bar]					[Red bar]	[Red bar]			
6. 안전/보건관리자 워크숍 및 직무교육				[Red bar]	[Red bar]							
7. 안전 보건 실무자 전문교육 (외부)							[Red bar]	[Red bar]				
8. 취약시기 안전대책	[Red bar]	[Red bar]										
9. 안전지원제 (전현장)	[Red bar]											
10. 안전작업절차서	[Red bar]	[Red bar]	[Red bar]	[Red bar]	[Red bar]	[Red bar]	[Red bar]	[Red bar]				
11. 무재해 100일 운동 시행	[Red bar]	[Red bar]	[Red bar]									
12. 신입사원 직무교육 (2년차 미만)	[Red bar]	[Red bar]	[Red bar]	[Red bar]								
13. 안전보건경영 시스템 준비		[Red bar]								[Red bar]		

### 5-2.3.3 중점 관리 항목 선정 관리

	작업명	현장 중점 안전관리 항목	재해유형
1	안전 관련 행정 처벌	산업안전보건법 관련 행정처벌 ZERO-안전관리비 사용, 산업재해 보고	행정
2	개구부 안전 작업	덮개 설치 및 작업필요에 의한 덮개 제거 시 방호울타리 설치	추락
3	추락위험 고소작업	안전 난간대 및 수직보호망, 작업발판 밀실 설치, 안전대 착용	추락
4	전기 취급작업	피복 상태 및 접지상태 확인, 누전차단기 작동 확인점검	감전
5	사다리 사용작업	전기, 설비, 실내 작업 사다리 작업 전면 중지	추락,전도
6	이동식 들비계 작업	승, 하강용 설비, 안전난간대, 작업발판 밀실 설치여부, 안전대 착용	추락,전도
7	크레인 자재 인양작업	와이어로프 점검, 신호수 배치, 작업구역 주변 근로자 통제	전도,협착
8	굴삭기 관련 작업	통제원 배치, 이동 경고 장치, 이탈 방지 장치 설치, 과다굴착 금지	협착,붕괴
9	건설기계 관련 작업	펌프카 아웃트리거, 지게차 과다 여부, 호이스트 비상정지장치 점검	전도
10	거푸집 설치, 해체작업	갱폼 전단볼트 설치 상태, 조립/해체 순서 준수, 서포트 적정설치 여부	전도,낙하 ,붕괴



## ■ 안전관리팀 업무 분장



☎ T. 02-3781-0700(031-881-3487)  
☎ F. 02-548-6888~9(02-749-2510)

안전관리 팀장 : 신봉규  
☎731

### ■ 안전관리 업무 총괄

차장 남상욱  
☎760

#### ■ 안전 관리

- 현장별 안전사고 접수 및 대책 수립
- 보호구 및 안전관리 시설 관리
- 안전, 보건관리자 채용, 인사이동, 평가
- 비상사태 발생 조직에 대한 지원
- 현장 안전점검 및 지도
- 산재보험 보상 업무
- 사망률 및 재해율 산정
- 안전관리비 집행 및 검토
- 산재 예방활동 실적 평가
- 유해위험 방지 계획서 심사
- 안전관리 지침서 작성 및 보급
- 건설재해예방 기술지도
- 안전 관리자 선임
- 무재해 운동 업무